

**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

**하 남 시  
【기업지원과】**

#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16. 5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# 1. 개정 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,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어,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(안 제7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#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5년 12월 31일 ~ 2016년 1월 19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#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나. 규제관련협의사항 : 해당없음

### 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#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지원과

##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.”를 “위촉하되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과장 김재의
	팀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팀장 이문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최효선 (790-5542)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(심의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기업지원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<u>위촉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심의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촉하되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# 【관계법령 발췌서】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4.11.19.] 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 02-2100-3518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 
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  
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